

# 보안카드 발급/폐기/정지/해지

최근개정일: 2024.04.30

### Key Point

- ✓ 실명번호 단위로 발급됨 (1인 1개의 보안카드만 발급 가능)
  - OTP 사용등록 된 경우 OTP가 보안카드에 우선하여 적용
- ✓ 제휴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의 유선 관리점 변경시 보안카드 사용 업무가 불가하므로 온라인상에서 OTP 등록하거나 당사 영업점 내점하여 보안카드 발급받도록 안내
- ✓ 관련화면 : [TR-2369] 고객보안카드발급 및 정지/해지, [TR-2373] 고객매체기본정보조회

### 업무개요

### 가. 보안카드란?

- 1)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및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가 표시된 카드
- 2) 보안카드 뒷면에 4자리 코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안카드 XX번 앞 2자리, 보안카드 XX번 뒷2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함

구 분	자릿수	오류횟수 제한	구 성	비고
보안카드 비밀번호	4	5회	숫자	5회 오류시 재발급

### 나. 보안카드 발급단위 / 유효기간

- 1) 실명번호 단위로 발급 (1인 1개의 보안카드만 발급 가능)
- 2) 보안카드 발급 고객이 OTP 등록시 기존 보안카드는 사용 불가
  - \* OTP 사용고객이 OTP를 해지하더라고 예전 보안카드는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보안카드 재발급 필요
- 3) 유효기간 : 발급일 ~ 폐기일

#### 다. 사용용도

- 1) 공동인증서 발급/재발급 (폐기 포함)
- 2) 미약정 은행이체 및 계좌간대체, ARS주문비밀번호 등록/변경/초기화 등

### 라. 보안카드 회수 및 폐기

- 1) 보안카드 뒷면에 인자된 숫자가 지워졌거나 보안카드 자체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2) 발급 오류로 인해 잘못 발급된 경우

### 마. 보안카드 정지 / 정지해지

1) 정지 : 파출계좌의 고객 보안카드 교부 전 정지

2) 정지해지 : 보안카드 비밀번호 연속5회 입력 오류로 정지 상태를 해지 또는

파출계좌 교부 후 정지해지

#### 바. 보안카드 재발급 : 분실로 인한 재발급

### [참고] 보안카드 비밀번호 연속 5회 오류시

□ 해당 보안카드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며, 이 경우 온라인채널에서 보안카드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불가함 (미약정 은행이체 및 계좌간 대체,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) 내점하여 정지해지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함

### 가능여부 / 가능시간

### 가. 가능 여부

구 분	ODS(파출)	내점	유선	대리인	NET	온라인 채널
보안카드 발급	신규개설시	0	X	X	0	없음
보안카드 재발급	Х	0	Х	Х	0	없음
보안카드 폐기	Х	0	Х	Х	0	없음

### 나. 가능시간

1) 영업점 내점 : 영업일, 업무시간 내

### 징구서류

징구서류	-	개인	법인		
	본인	법정대리인	대표자	일반대리인	
계좌주 실명확인증표	•	_	-	-	
대리인 실명확인증표	-	•	-	•	
대표자 실명확인증표	-	<del>-</del>	•	-	
가족관계 확인서류	-	•	-	-	
사업자등록증 사본	-	_	•	•	
위임장	-	_	-	•	
법인인감증명서	-	<del>-</del>	-	•	
당사양식	계좌개설신청서(신규발급) 거래관련 종합처리서(재발급), 거래인감/서명 법인의 개인대리인 : 개인(신용)정보제공동의서(대리인용) 추가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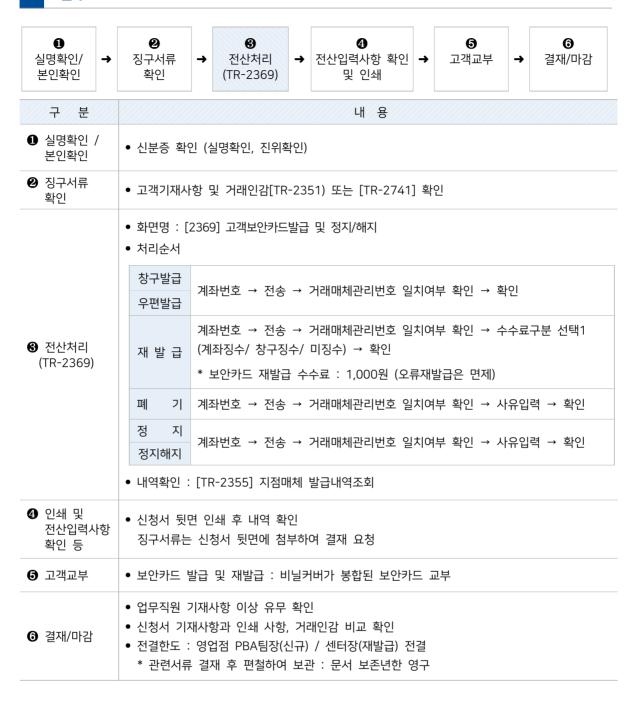
### [참고] 서류징구시 확인사항

- □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법정대리인이 징구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류
  - 법정대리인 :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 제출 (친권자확인용) 법정대리인을 본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가능
- □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개월
- □ 법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처리시 위임장란의 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법인인감을 날인 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용인감계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인감 날인가능

### 보안카드 재발급시 본인확인방법

□ 보안카드 재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 주소, 계좌개설점,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가지 이상 반드시 확인 / 작성

### 4 업무 Folw



# 5 유의사항

- 가. 제휴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의 유선 관리점 변경시 보안카드 사용 업무가 불가하므로 온라인상에서 OTP 등록하거나 당사 영업점 내점하여 보안카드 발급받도록 안내
- 나. 보안카드 등록시 실명확인번호별로 전산에 등록됨에 따라 '무매체약정(보안카드)'계좌는 약정 자동 해지됨에 유의 (기존 보안매체 발급 고객은 무매체 약정 불가)
- 다. 고객이 유선으로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직원이 고객 실명확인 후 접수하며 사고등록 해지는 유선으로 불가하므로 고객 본인이 직접 내점하도록 안내

#### 보안카드 관리 업무 6

가. 보안카드를 담당부서는 WM지원부이며 보안카드 제작, 교부, 반납·폐기관리를 담당함

#### 나. 보안카드의 교부·수령



### 다. 보안카드의 반납·폐기

- 1) 영업점은 재고 과다 또는 증권매체 변경에 따른 교체, 점포폐쇄 등으로 소관부서로 반납하는 경우 잔여 수량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반납처리 (TR-2309)
- 2) 소관부서 담당자는 반납된 증권매체와 협조문의 내용을 대조한 후 감사부서에서 지정한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폐기처분 하여야 함

### 위임전결 / 관련규정

**가. 위임전결** : 센터장 전결

나. 관련근거 : 증권매체 관리지침

#### 관련화면 8

화면TR	화면명	내용
2355	지점매체 발급내역조회	지점 매체(보안카드 등)의 기간 내 발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발급, 폐기, 재발급, 미발급, 특정계좌, 신규 등의 현황울 조회할 수 있는 화면
2369	고객보안카드발급 및 정지/해지	보안카드 발급/폐기/정지/정지해지에 처리하는 화면
2373	고객매체기본정보조회	종합계좌번호/실명확인번호/고객번호별로 고객매체에 대한 발급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화면
2308	지점매체 수령등록	영업점에서 본사 소관부서에 신청한 매체를 수령하였을 경우 수령등록 하는 화면
2309	지점매체 반납등록	영업점에 보관중인 보안카드를 소관부서에 반납할 때 사용하는 화면
2359	지점거래매체잔고현황	매체종류별로 수량 및 잔고현황을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화면



# ₩ 제·개정이력

제·개정일자	재·개정 내역	검토부서	작성부서/작성자
2024-04-30	· (개정) 업무매뉴얼 전면개편	WM지원부	업무개발부 김영수